

기안용지

공유기호	시설 30310-193	(전화번호 731-6346)	국장 4조 1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6. 4.		
보존연한	영구		

보 조 기 관	도시계획국장	전결	법무담당관 심사 협조통계관 행정과장
	시설계획과장	32	
	시설계획2계장	[Handwritten Signature]	
기안책임자	박필승	86. 4. (일요일)	조

경 유 수 신 참 조	각안참조	[Seals and Stamps]
계 목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제1안 내부결재

1. 우천시 관내 구로구 시흥동일대의 부족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구로구청장 으로부터 시흥동 산24-12일대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요청이 있어

2. 우천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86.1.29)에 상정하여 심의 가결되었기 도시 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 시행하겠습니다.

첨부 : 일건서류 1부. 끝.

정서

제2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Seal]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Seal]

1. 우천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구로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정지 질서 창조

1205-25(2-1)A(강)
1981. 12. 18승인

190mm x 268mm (인쇄용지 2급 60g/m²)
가 40-41 1985. 9. 5.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4.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M ²)	비고
신설	학교	구로구 시흥동 산24-12일대	27,840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생략). 끝.

계3안

수신 : 건설부장관

제목 : 같음

1. 우천시 관내 도시계획시설(학교)를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끝.

계4안

수신 : 구로구청장

제목 : 같음

1. 도정 30310-1634(86.1.21)호와 관련임.

2. 위호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
기 통보하니 도면정리 및 관계과에 통보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하여 조속 처리승인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끝.

계5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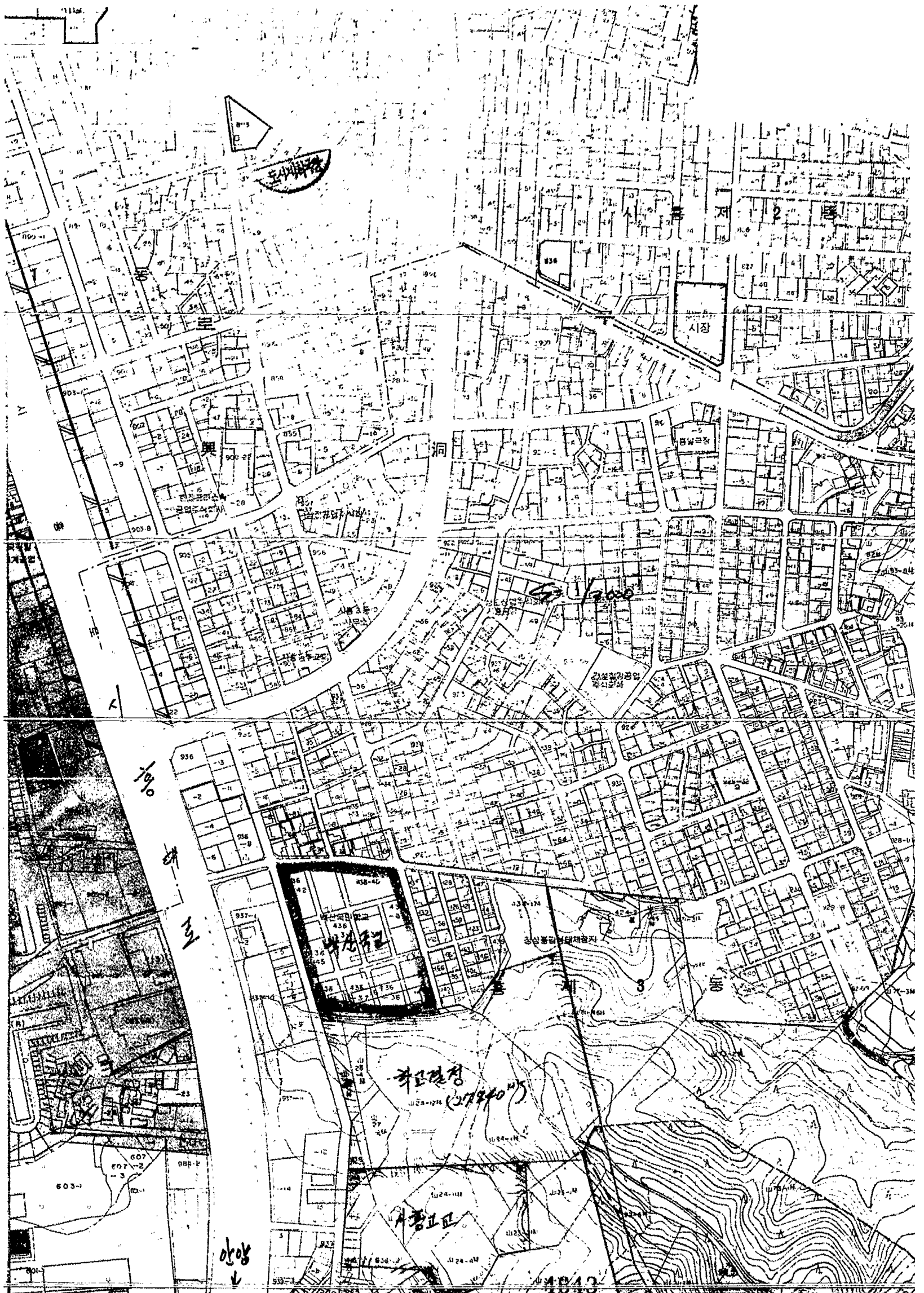
수신 :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관리과장)

제목 : 같음



4641

1. 우천시 관내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보하오니
2. 귀위에서는 금회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가 조속 보상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끝.
계6안
수신 : 총무처장관
제목 : 관보계제 의뢰
1. 별첨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86.4.)의 내용을 관보계제 의뢰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2부. 끝.
계7안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감음
1. 우천시 관내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보하오니 도시계획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끝.
수신처 : 도시계획과장, 지적과장



시정청

시정청

시정청

북동부
북동부 (27840)

북동부 (27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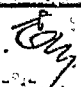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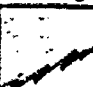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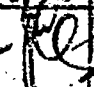

시정청

시정청

1843

1966.1.29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록
(1966. 제1차 위원회 본회의)

의정록 의결장	가로계획 1계장	사설계획 2계장	사설계획 1계장	시설계획 과장	공 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 참석 상황

0 일시 : '86.1.29 16:00 - 17:00

0 장소 : 소회의실

0 안건 : 13개안 24건

0 회의참석 : 22명중 17명 참석

참석위원	위원	위원	위원
	이강노		안함수
	신동훈		지홍원
	노응희		도철응
	이등배		하재근
	안영백		장현익
	역흥규		임제량
	이종우		정영섭
	우명규		최종무
	이 등	간담	서 기

0 불참위원	위원장 김진원	위원	김수근
	위원 황당찬	"	오휘영
	김경등		

0 기탁참석 시설계획과장 서무전, 재개발과장 장기찬, 상임기획단 이종재,
 목동지구개발사업소 토목공사과장 이신영, 계장 이덕수

~~제5안 마포구 구역 1지구 사업계획 변경결정 - 가결~~

- 마포구 마포동 35-7의 5필지
 - 건폐율 43.8 → 43-44%
 - 용적을 648.86 → 645-650%

제6안 양동 제4-1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 가결

- 중구 남대문로5가 510일대

제7안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 - 가결

- 서대문구 연희동 203-1일대(A=6,968m²)

제8안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 - 가결

- 강서구 특동 77-5 (A=450.8m²)

제9안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통신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 가결

-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 공용의 청사 적지 A=73,594m²
 - ~~통신시설 결정 A=73,662m²~~

제10안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 가결

- 구로구 시흥동 산24-12일대 A=27,840m²

제11안 도시계획시설(학교, 도서관) 변경 결정 및 결정

- 서대문구 연희동 산2-6일대
 - 학교변경 29,490→25,250m²(감 4,240m²)
 - 도서관 신설 A=4,240m²

제12안 도시계획시설(도트) 결정 - 가결

- 구로구 고척동 256-51 - 고척동 257-7 (B=10m L=100 m)

제13안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 - 가결

- 강서구 특동 산2-3일대 (A=33,420m²)
- 구로구 고척동 산9일대(A=29,560m²)

회의 진행 상황

간 사 상원보고

도시계획국장 위원장께서 바쁜일이 있어 오늘 참석 하시지 못하셨으므로
위원장 대리인 이광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일 등 동의

위원장(대리 이광노위원 이하같은) 지금부터 '86년도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사 회 극단의력

간사로부터 '85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및 금일 상정안건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 사 지금부터 '85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 및 금일 상정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5년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및 '86년도 제1차 위원회
심의안에 의함)

제1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 도봉구 상계동 산133번지

소위원회의임

간 사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위원장 심의안의 상임기획단 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임기획단 이종재 이지역이 당초에는 상계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여건변화에 의해 본인과 같이 별도로 용도를 변경케 되었으나
용도지역변경은 개발이익이 크므로 공공사업일 경우만 변경해
주었습니다.

~~본안은 공공이익과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차후에 이런사태가 있을경우를
대비해서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위원장 다른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겠습니다.
 일 등 동의 (가결)
 제8안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
 0 강서구 목동771-5(특: 등사무소) 가결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겠습니다.
 일 등 동의 (가결)
~~제9안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통신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 공용의 청사 택지 $A=73,594m^2$
 . 통신시설 결정 $A=73,662m^2$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현 K.B.S청사로 77년에 공용의 청사로 결정 하였으나 그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현 용도인 등사에 맞는 도시계획시설로 평형을~~
~~변경하는 절차 이행입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겠습니다.
 일 등 동의 (가결)
 제10안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0 구로구 시흥동 산24-12일대 가결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
 구로지역에 학교가 부족하여 본안을 수립했으며 임상이 양호하프르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는 곤란합니다.

하계근위원 '87년도에 중학교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여흥구위원 현재의 도시계획상 용도는 무엇입니까?
 시설계획과장 공치지구입니다.
 위원장 공람기간중 제기한 이의 신청과 같은 민원은 해결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일 등 동의 (가결)
 제1안 도시계획시설(학교, 도서관) 변경결정 및 결정
 0 서대문구 연희동 산2-6일대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현재 학교개설중에 있으며 이중 일부를 분리하여 도서관을 건립키
 위한 입안입니다.
 하계근위원 학교 용지로서 충분하여 일부에 도서관을 건립 하면 이의를 제기하므로
 이를 예방키 위해 도서관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후 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다른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 하겠습니다.
 일 등 동의 (가결)
 제2안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0 구로구 고척동 256-51 - 고척동 257-7 (S=10m L=100m)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시장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해 입안했습니다.
 여흥구위원 보상은 됩니까?
 시설계획과장 구거부지이므로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겠습니다.